

【학위취득자】

- ①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대학원별 석사학위, 박사학위 취득자
- ② 석·박사통합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, 석사학위 취득 시 '석사학위'로, 박사학위 취득 시 '박사학위'로 구분
 - ※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포함(단, 교육과정 공동운영생, 연수과정생 등은 입력에서 제외)
 - ※ 외국 학생 중 학위과정생은 학위취득자에는 포함하나 진학자, 취업자에서 제외

【취업자】: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학위취득자 중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해외취업자, 농림어업종사자, 개인창작활동 종사자, 1인 창(사)업자, 프리랜서

【건강보험 직장가입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건강보험 DB를 통해 확인)
 ※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대학의 재정(교비, 산학협력단 회계 및 정부재정지원금 등 대학의 모든 회계를 포함)으로 인건비(4대 보험료 포함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*받아 한시적으로 취업한 졸업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
 * 학위취득자가 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, 또는 대학이 학위취득자의 인건비를 기업체에 지원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
 ※ 비상근근로자 및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부적격자는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

【해외취업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해외 국가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며, 91일 이상 고용 계약한 자

【농림어업종사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
 ※ 농림어업종사자 인정기준: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)에 의거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되거나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자, 어업허가내역서(어업허가증, 수산업법) 및 어업인 확인서(해양수산부 고시)를 제출한 자,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을 제출한 자

【개인창작활동 종사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졸업 이후부터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까지 개인작품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자

【1인 창(사)업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 DB에서 2023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, 2023년 연간 사업소득액의 합계가 762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또는 2023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,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'초기창업패키지 사업'(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)에 선정되어 참여한 자

【프리랜서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국세청 DB에서 2023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6,031,740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자

【진학자】

- ①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*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**으로 진학 및 재진학한 자
 - * 대학, 교육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(사이버대학), 기술대학, 각종학교, 대학원, 대학원대학
 - **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, 사내대학, 원격대학
- ② 진학자에서 제외되는 자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진학자에서 제외됨
 -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2024년 입학허가서를 받은 진학예정자
 - 국외 교육기관으로부터 2024년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위 준비과정으로 어학코스에 입학한 자
 - 해외 어학연수자
 - 학점은행제 및 특정 학점인정기관(예: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 훈련기관, 평생교육원 등) 입학한 자

【입대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군 입대자

【취업불가능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수행자, 사망자, 해외이민자,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

【외국인유학생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외국국적을 가진 유학생(외국국적 재외동포 포함)으로서, 학위를 취득한 자

※ 진학, 취업 등 졸업 후 상황과 관계없음

【제외인정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(의료급여 수급자, 여자군인 중 입관 전 훈련생,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,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학과 졸업자, WFK사업 참여자)

【기타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취업, 진학, 입대, 취업불가능, 미상, 제외인정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【미상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

【취업률(%)】: [(건강보험 직장가입자 + 해외취업자 + 농림어업종사자 +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+ 1인(창)사업자 + 프리랜서) / {졸업자 - (진학자 + 입대자 + 취업불가능자 + 외국인유학생 + 제외인정자)} × 100

【입학당시 기취업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입학당시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

【교내취업자】: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학교법인 및 관련기관에 1년 이상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(2023년: 2,010,580원, 2024년: 2,060,740원)를 받는 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'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사업' 참여자이면서 취업처가 해당 대학인 자
※ 계약만료 이전에 사직한 교내취업자는 사직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, 사직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취업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

【유지취업률(%)】: 취업통계 조사기준일(2023. 12. 31.)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(수시(4회)), (2023. 12. 31.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추가조사 시점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/ (2023. 12. 31.) 건강보험 직장가입자) × 100

$$- 1차 유지취업률 = \frac{'23년 12월 \cdot '24년 3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{'23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 \times 100$$

$$- 2차 유지취업률 = \frac{'23년 12월 \cdot '24년 3월 \cdot 6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{'23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 \times 100$$

$$- 3차 유지취업률 = \frac{'23년 12월 \cdot '24년 3월 \cdot 6월 \cdot 9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{'23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 \times 100$$

$$- 4차 유지취업률 = \frac{'23년 12월 \cdot '24년 3월 \cdot 6월 \cdot 9월 \cdot 11월 모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{'23년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} \times 100$$

※ 학과명칭 변경, 신설, 폐과, 학부제 등으로 인해 졸업자가 없는 학과 또는 학부제의 경우 비고란에 특이사항을 명기함

■ 참고사항

- 졸업생의 취업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(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)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